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576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5764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69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변론 종결 2024. 10. 25.

판결 선고 2024. 11. 8.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6929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1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인 C로 하여금 이천시 D 지상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담당자로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면허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로 된 계좌에서 13,089,000원을 C, C의 자녀 등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직원이 아님에도 4,630,5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합계 17,719,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아 원고 회사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C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13,089,000원을 C 또는 제3자에게 송금한 사실, 또한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자로서 근무한 대가 및 E이 원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를 도와준 대가로 4,630,5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74468호로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에 불과한데도 그 공사대금 70,497,3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 9.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17,719,500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채

판사허일승

판사송승훈